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61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8. 5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사유

2004. 6.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관련 한시기구를 자치조직권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시적인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유기구로의 전환 운영에 앞서 한시기구 시한 연장에 따라 한시정원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하여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일부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읍면동 기능전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함.
(부칙 제4항, 한시정원)

3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및 근거
 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9조(한시정원)
 - 경남도 행정과-5887(2004.6.29)호의 「읍면동 기능전환 관련한시기구 처리지침」

4. 본 문

- 덧붙임과 같음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1763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(한시정원)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2003. 11. 7 조 1763></p> <p>①~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(한시정원)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<u>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, 3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그중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2003. 11. 7 조 1763></p> <p>①~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(한시정원)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<u>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.</u></p>